

## 02\_저작권으로 창작물의 가치를 지켜라

### #1

이번 시간에는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표현된 창조적인 작품을 의미하며, '저작자'는 그런 저작물을 만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저작물이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담고 있어야 하며, 또, '그것이 창조적인 작품인가'가 고려되어 판단됩니다. 먼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차이를 통해 저작권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 #2

#### ※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차이 1. 출원

지식재산권은 현재 총 5가지가 있으며, 이는 기술, 발명, 상표, 디자인 등을 보호하는 산업재산권과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으로 나뉩니다. 이 중 저작권과 다른 권리들 사이에는 출원 절차에 대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저작권은 특허청에서 진행하는 출원 절차 없이도 권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은 단순히 창작하는 것만으로도 권리가 발생합니다.

### #3

#### ※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차이 2. 보호기간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또 다른 차이점은 보호기간에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의 경우,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은 등록된 후 20년 동안, 실용신안권은 출원 후 10년 동안, 상표권은 등록된 후 10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보호 기간은 대체로 10년에서 20년 사이입니다.

반면에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기간과 사망 후 70년 동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작권법」 제10조에 따르는 것으로, 저작권은 저작물이 창작된 순간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다른 권리들에 비해 상당히 긴 편입니다.

### #4

#### ※ 저작권의 주체

앞서 저작물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생성한 창작물은 어떨까요? 최근에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다양한 창작물이 생성되면서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의 주체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것만이 저작물로 인정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전혀 참여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딥러닝을 통해 만들어낸 창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다수의 견해입니다.

## #5

### ※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의 문제

인공지능이 제작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제작한 창작물도 사람이 제작한 창작물로 인정할 수 있어 어떤 창작물이 인공지능으로 제작했는지에 제작 여부를 알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인공지능산업이 점점 발달됨에 따라 인공지능 창작물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인공지능 저작물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모방하는 작품이 늘어나면서 이를 이용 및 구매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치를 유지할 수 없다는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 #6

만약,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에 저작권을 부여하게 된다면 그 주체는 누가 될까요? 이에 대해 세 가지 선택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 ※ 인공지능

첫 번째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선택지는 인공지능 자체입니다. 인공지능이 창작물을 만들었으니, 인공지능이 창작자로서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 발생할 문제를 가장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저작권법'의 기본 원칙인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인공지능을 인간으로 인정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 #7

### ※ 인공지능 개발자

두 번째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선택지는 인공지능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인공지능 개발자가 인공지능 자체를 만들었으므로,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개발자는 창작물 자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도하거나 참여하지 않았으며,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자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8

#### ※ 인공지능 이용자

세 번째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선택지는 인공지능을 사용한 사람입니다. 인공지능 이용자는 인간이며, 어느 정도 창작물을 의도하고 작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과물을 정확히 예측하고 창작 행위를 한 것은 아니며, 기여도 또한 가장 낮으므로 이를 저작자로 간단히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9

법적으로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머리 속에 있는 아이디어도 저작물이 될 수 있을까요? A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B에게 이야기했고, B는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영상물을 만들었습니다. 이 경우 A가 이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 #10

#### ※ 아이디어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도112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등 참조)

저작권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므로,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중에서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고,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그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한 자가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아이디어와 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창작물의 저작권이 별개로 취급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 #11

#### ※ 판결문 해석

판례에 따르면 'A가 B가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오'입니다. 이전에 살펴본 사례에서 A는 B에게 저

작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와 같은 상황은 실제로 굉장히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중요한 아이디어를 신중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 #12

저작권으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과 표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서 확인해볼 요건은 ‘창작성’입니다. 저작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 #13

##### ※ 지식재산권이 인정받는 이유

저작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기술이나 제품이 개발되었는데, 이런 기술이나 제품이 사회 전체에 공유되지 않고 개발한 사람만이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기술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인류의 중요한 자산인 ‘기술’이 소멸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을 발명한 사람에게 무조건 그것을 사회적으로 공개하도록 강요한다면, 그 사람은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기술의 공개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다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것을 공개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 #14

##### ※ 기술 공개 설득을 위한 방법

지식재산권이 인정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이라는 개념이 탄생하였습니다. 이는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한 사람이 그것을 일정 기간 독점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동시에, 그 기간이 끝나면 그 기술이나 제품이 사회 전체에 공유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창작자나 발명자는 자신의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고, 사회 전체도 그 기술이나 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15

### ※ 창작물 보호가 필요한 이유

예술적인 창작물 역시 그 모방품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탄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술가들이 작품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미술, 음악, 소설, 수필 등의 여러 예술 분야가 발전하는 데 기여합니다. 저작권이 생긴 이후부터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작품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6

### ※ 저작권의 ‘창작성’

저작권에서 중요한 것은 작품이 기존과 다르고, 새로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작성'이라는 저작권의 보호 요건으로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창작성이란, 기존의 작품과 구별될 수 있는 독특함과 새로움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그 작품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7

### ※ 창작성이란?

창작성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이유는 창작성의 개념 자체가 애매하고 추상적이다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창작성을 '작가의 독자적인 생각을, 독자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언급되는 '생각'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며, 표현하는 방법도 추상적입니다. 글, 그림, 음악, 영상은 물론이지만, 무용이나 춤과 같은 몸으로 표현하는 예술도 창작물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창작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저작물의 특성과 해당 분야에서 어떠한 창작성을 인정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